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17 민 사 부 ( 합 의 )

결 정

사 건 2015가합 9047 손해배상(기)

대표당사자가  
되 기 위 한  
소 제 기 자

1. 김희동  
부산 금정구 식물원로
2. 강홍수  
창원시 성산구 상남동
3. 조문기  
서울 강동구 성내동
4. 임여정  
서울 강서구 내발산동
5. 박경동  
대구 북구 학정로 110길
6. 장일경  
서울 강동구 명일동

주 문

이 사건에 관하여 김희동, 강홍수, 조문기, 임여정, 박경동, 장일경을 대표당사자로 선

임한다.

## 이 유

김희동, 강홍수, 조문기, 임여정, 박경동, 장일경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7. 11. 23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부   상   준

판사      손   혜   정

판사      강   명   중